

팽창 탱크

I 사례 개요

- 사 례 번 호: NY N359542 (2026.03.30.)
- 쟁 점 사 항: 원산지 표시를 위한 원산지 판정
- 최종 수출국: 태국
- 최종 원산지: 태국



II 사실관계

용도	• 차량, 농업기계 및 기타 장비의 냉각 시스템에 사용되는 보조 구성품		
재료		중국	• 압력 캡 • 동관 및 메인 파이프 • 센서 • 개스킷 및 걸쇠
		태국	• 탱크 본체 • 플로트 보울 및 플로트 구성품
Sourcing ▾  중국  캡, 동관, 파이프, 센서 생산 Manufacturing ▾  태국  STEP 1 중국산 부품 수입 STEP 2 탱크 본체 생산 STEP 3 플로트 보울 및 플로트 구성품 생산 STEP 4 최종 조립 STEP 5 포장 Export ▾  태국 최종 수출			
상세 공정		중국	• 압력 캡, 동관 및 메인 파이프, 센서, 개스킷 등 생산
		태국	• 금형 사출을 통해 탱크 본체 생산 • 플로트 보울과 플로팅 구성품 생산 • 중국산 부품과 태국산 부품 최종 조립 • 검사 및 포장

III 판정 결과

《CBP의 판정》

- ⊙ 팽창 탱크의 기능을 고려할 때, 압력 캡과 센서는 탱크가 설계된 목적에 맞게 작동하도록 하는 필수 구성품에 해당하나, 냉각수 등 유체를 저장하고 전체 제품의 구조와 기본 기능을 형성하는 탱크 본체 역시 그와 동등하게 중요한 구성요소로 평가됨

- ⊙ 이 사례에서는 주요 구성품인 탱크 본체가 태국에서 제조되었고, 최종 조립도 태국에서 이루어졌으며, 태국산 구성품 비용 및 노동비가 총비용의 75%를 초과한다는 점을 근거로 팽창 탱크의 원산지를 태국으로 판단함

→ 원산지 표시 목적상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태국

IV 시사점

- ⊙ CBP는 탱크류 어셈블리에서 센서, 캡, 주입구, 배관 등 부속 부품이 결합되더라도, 이들이 탱크의 저장 기능을 보조하거나 확장하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 탱크 본체를 핵심 구성요소로 볼 수 있음
- ⊙ 다만, 필터 등 결합된 기능성 부품이 최종제품의 주된 기능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, 탱크 본체가 아니라 해당 부품이 원산지 판단의 중심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

CBP의 참고 판정 사례

물품명	자동차용 요소수 탱크 어셈블리
사례번호	NY N305450 (2019.08.20.)
쟁점사항	제301조 적용을 위한 원산지 판정
사실관계	• [중국] - 센서 구성품, 링 인서트, 탱크 캡, 주입구 등 부품 생산 • [싱가포르] - HDPE 생산 • [대만] - HDPE 및 블랙 마스터배치 등의 원재료를 사용하여 탱크 성형 - 중국산 센서 구성품을 단순 조립하여 센서 완성 - 탱크를 나머지 부품과 함께 최종 조립
판정 결과	• 최종제품의 본질은 탱크 자체라고 판단되며, 해당 탱크는 대만에서 원재료로부터 성형되었으므로,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대만임

유의사항: 유사한 물품일지라도 사실관계(원재료, 제조공정 등) 및 최종 제품의 용도와 기능에 따라 원산지 판정이 달라질 수 있음